

2018년도 상반기 등급분류 신청자 명단

연번	시도명	구분	성명	성별	장애유형	현재등급	연락처	검사일	검사자	비고	등급분류 가능여부
1	울산	재검	방*미	여	절단및기타장애	TT8	010-9606-****	2009.11.29	이경우		
2	강원	재검	박*선	남	척수장애	TT4	010-2230-****	2010.02.01	나은우		
3	강원	재검	김*영	남	척수장애	TT4	010-4330-****	2011.10.17	나은우		
4	경기	재검	박*원	여	절단 및 기타 장애	TT8	010-3573-****	2017.02.23	나은우	2년 경과하지 않음/추가장애	
5	경기	재검	윤*연	남	척수장애	TT9	010-3015-****	2009.03.19	윤승현	추가장애	
6	경기	재검	민*효	남	지체장애 3급	TT8	010-2284-****	2011.09.15	나은우	추가장애	
7	경기	재검	박*경	남	뇌병변. 신장장애	TT7	010-8710-****	2015.07.08	여봉구	추가장애	
8	경기	재검	오*진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4	010-2739-****	2016.11.17	이원재,이건우,정석	2년 경과하지 않음/추가장애	
9	경기	재검	홍*태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4	010-5312-****	2015.11.13	정희석, 정석, 이건우	추가장애	
10	경기	재검	양*순	여	척수장애	TT9	010-4328-****	2017.11.17	정석	2년 경과하지 않음/추가장애	
11	인천	재검	임*원	남	척수장애	TT4	010-9026-****	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			
12	인천	재검	장*화	남	지체장애	TT3	010-5393-****	2007.05.28	박주현		
13	경북	재검	전*표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9	010-2816-****	2010.03.09	변승득	추가장애	
14	대구	재검	장*로	남	절단 및 지체장애	TT8	010-3508-****	2013.02.17	박현		
15	대구	재검	장*환	여	절단 및 지체장애	TT9	010-4906-****	2017.04.07	정희석, 정석, 이건우	2년 경과하지 않음	
16	세종	재검	서*오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8	010-4539-****	2016.07.20	여봉구	2년 경과하지 않음/추가장애	
17	세종	재검	박*재	남	뇌변변장애	TT7	010-6679-****	2011.02.24	정혜심	추가장애	
18	서울	재검	이*권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7	010-5157-****	2015.01.14	여봉구	뇌수술 후유증	

19	경기	재검	김*철	남	절단 및 기타장애	TT8	010-4955-****	2016.11.17	이원재,이건우,정석	2년 경과하지 않음/추가장애	제21회 대한장애인협회장배 불참/ 재검불가
20	충북	재검	김*욱	남	지체	TT9	010-6421-****	2014.03.28	정희석, 이건우, 정석		제21회 대한장애인협회장배 불참/ 재검불가
21	충북	재검	정*희	여	지체	TT4	010-2593-****	2016.01.21	나은우		제21회 대한장애인협회장배 불참/ 재검불가
22	전북	신규	유*경	여	척수장애	*	010-3209-****				
23	전북	신규	강*수	남	척수장애	*	010-3658-****				
24	전북	신규	정*우	남	절단및기타장애	*	010-8640-****				
25	전북	신규	김*권	남	절단및기타장애	*	010-3190-****				
26	전북	신규	심*호	남	지체장애4급	*	010-4189-****				
27	전북	신규	강*숙	여	지체장애3급	*	010-2300-****				
28	전북	신규	박*숙	여	지체장애2급	*	010-2206-****				
29	전북	신규	김*호	남	뇌병변2급	*	010-4334-****				
30	전북	신규	송*호	남	지체장애2급	*	010-9346-****				
31	전북	신규	진*	남	뇌병변4급	*	010-8709-****				

※ 등급분류실시규정 제6조

- ① 신규 또는 재 등급분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 한 선수로 협회가 주관 또는 주최한 대회(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제외)에 2년간 4회 이상 참여한 자로 본인의 신체기능이 해당 등급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자.
- ② 신규 또는 재 등급분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의학적인 사유로 인하여 신체기능 또는 장애의 정도가 획기적으로 저하 또는 증진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(진단서 등)를 제시할 수 있는 자.
- ③ 가맹 각 시, 도 협회를 통해 해당 선수의 등급에 대한 소청이 있는 자.
- ④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서 등급 점검팀에 의해 재 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협회가 판단한 자.
- ⑤ 기타 협회에서 해당선수의 등급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자.
- ⑥ 국제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단, 국제등급을 받은 후 5년간 ITTF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재 등급분류 대상이 될 수 있다.